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구제지원금의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1.2.26. 국회 의결, '21.3.15. 공포 예정)됨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비율은 국가 100분의 80, 관계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으로 함(안 제12조의2)
- 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며, 재심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 송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금액

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6조)

대통령령 제 호

다.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을 ‘피해금액의 100분의 80’에서 ‘피해금액’으로 조정함(별표 2)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재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말한다)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100분의 80
2. 관계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

제15조의2(재심의)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21.3.9. ~ ‘21.4.1.)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2항의 재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별표 2 제1호 본문 중 “피해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 소유의 자동차 피해는 가목 1)부터 4)까지의 피해에 포함하여 지원한도 금액을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				
결정번호		제 호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주문				
피해자 인정 여부	[] 인정		[] 불인정	
지원금 지급액	금액: 원정(₩)			
결정이유 및 지원금 명세는 뒤쪽에 기재				
년 월 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청인				

항 목		금 액
지원금 명세	1.	금액: 원정(₩)
	2.	금액: 원정(₩)
	3.	금액: 원정(₩)
	4.	금액: 원정(₩)
	5.	금액: 원정(₩)
	6.	금액: 원정(₩)
	7.	금액: 원정(₩)
	8.	금액: 원정(₩)
	9.	금액: 원정(₩)
	10.	금액: 원정(₩)
	합계	금액: 원정(₩)
기존 지원금		금액: 원정(₩)
지급액		금액: 원정(₩)
결 정 이 유		
[피해자 인정 여부]		
[지급액 산출근거]		

- 6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제 호

성 명(법 인 명):

주 소: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붙임 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심의위원회의 결정(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은 제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
2. 재심의 신청서 서식 1부

년 월 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청인**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신 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필요시 30일 이내에서 연장)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신청 구분	[] 피해자 인정 [] 지원금 지급		
신청 사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회의 결정(결정번호 제 호, 년 월 일자)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이
아
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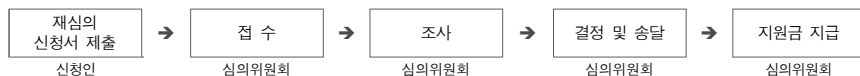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2(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재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말한다)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100분의 80 2. 관계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
<신설>	제15조의2(재심의)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지원금의 지급) (생략)	제16조(지원금의 지급) ① (현행 제6조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 제2항의 재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